

의안번호	2216229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2.2.
추계번호	26F034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협동조합 조합원 용자 인지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인지세의 면제 (안 제116조제2항제1호)	○ 협동조합 조합원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수혜대상: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, 업연초생산협동조합, 산림조합 조합원 － 면제대상 서류: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한 소비대차증서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6조제2항제1호(인지세의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의 용자용 금전소비대차증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하는 경우 인지세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16조제2항)

- － 수혜대상: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, 업연초생산협동조합, 산림조합의 조합원
- － 인지세 면제 대상: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한 소비대차증서(용자금액의 합계액 1억원 이하)
- － 적용기한: 2030.12.31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용자
용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해당 기
초자료의 부재로 인해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, 농·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각 호별로
(면제대상 서류별)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, 특정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
실적 등의 기초자료가 부재함

－ 농어민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[표 1]과 같음

[표 1] 농어민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실적 : 2021-2025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－ 농·어민 지원	116	94	88	92	67
－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	6	7	7	727	976
계	122	101	95	819	1,043

자료: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, 각 연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